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75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황정아·위성곤·김남근

임광현 · 장철민 · 박정현

조승래 · 강준현 · 신정훈

박수현 · 조계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'최초 5일'에서 '최초 15일'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,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난임 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5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

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"를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"로한다.

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3일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.

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5일"을 "15일"로 한다.

제77조제1항 후단 중 "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를 "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고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--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 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시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-----출산전후휴가, 유산ㆍ사 산 ·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산휴가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-----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(이하 "출산 전후휴가 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하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----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 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

액을 지급한다.

- 1. (생략)
- 2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<u>5일</u>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.

<신 설>

②・③ (생략)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

1. (현행과 같음)
2
۵.
15일
<u> 10 E</u> .
<u>.</u>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
기간 중 최초 3일. 다만, 피보
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
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
다.
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7조(준용) ①
,
유산・사산휴가, 배
11 - 1 - 11 - 19

출산휴가"로 본다.	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
	<u>휴가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